

(조례안-참조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03. 9. 8.
제 출 자 홍경표 위원장 등 10인

□ 제안이유

-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인 이미지 효과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함.

□ 주요골자

- 의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안 제7조제4항)
-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안 제7조제5항)

□ 관련근거

-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성남시조례 제 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⑤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특별위원회)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신설> <신설> ④(생략) ⑤(생략)	제7조(특별위원회)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의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⑤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⑥(현행 제4항과 같음) ⑦(현행 제5항과 같음)

자치법규

경기 안산시

제공처 : 기획예산과 031-481-281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본문

발의자 : 안산시장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1991.04.04 조례제0401]

개정	1992.03.18	조례제0440호
개정	1995.01.17	조례제0577호
개정	1995.07.13	조례제0638호
개정	1995.10.31	조례제0654호
개정	1996.12.06	조례제0719호
개정	1998.06.29	조례제0793호
개정	1998.10.12	조례제0803호
개정	2000.04.04	조례제0910호
개정	2000.12.01	조례제0947호
개정	2001.11.29	조례제0995호
개정	2002.10.31	조례제1041호
개정	2003.06.18	조례제10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행정위원회 7명
2. 경제·사회위원회 7명
3. 도시·건설위원회 7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행정위원회 <개정 1998.10.12, 2000.04.04, 2000.12.01>
 - 가.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기타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행정지원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복지환경국(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2.10.31>
 - 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2.10.31>
2. 경제·사회위원회 <개정 1998.10.12, 2000.04.04, 2000.12.01>
 -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첨단산업과), 복지환경국(사회여성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1.11.29,2002.10.31>
 - 나.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농업기술보급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1.11.29>
3. 도시·건설위원회 <개정 1998.10.12, 2000.04.04>
 - 가.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1.11.29,2002.10.31>
 - 나. 상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1.11.29>
<개정2003.06.18>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 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의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00.12.01>
 ⑤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0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01>

⑦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1>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1995.01.17 조례 제0577호>

③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부 칙(199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06)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최초의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시행전의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최초의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조례 시행전의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간사 각각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1998.06.29)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의회·총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의회·행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2000.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